##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28 발의연월일: 2025. 3. 4.

발 의 자:소병훈・박용갑・안태준

이병진 • 서미화 • 김교흥

박지원・허 영・박 정

용혜인 • 윤호중 • 김영진

권칠승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암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에 대한 통계의 산출과 성별, 연령,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회집단별 암검진에서 암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면이 있음.

이에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 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 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전단).

법률 제 호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암검진 수검률,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의 통계(성별, 연령,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를 포함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① 보건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①		
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 요			
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			
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			
으로 수집·분석하여 <u>암 발생</u>	<u>암검진 수검</u>		
<u>률, 생존율 등의 통계</u> 를 산출하	률,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기 위한 등록・관리・조사사업	등의 통계(성별, 연령, 국민건		
(이하 "암등록통계사업"이라 한	<u>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u>		
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	구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를		
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u> 포함한다)</u>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			
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			
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			
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			
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u>.</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